
종 합 토 론

박성희(사회자)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모(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대응팀 대리)

윤성옥 교수님의 토론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송법상 명예훼손 조항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논하는 규정이고, 개인에 대한 권리침해구제 측면은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론중재위원회 업무와 중첩되는 게 아니라고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댓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댓글이 기사내용과 관련이 있든 없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댓글이 기사와 무관한 내용일 때 언론사와 ISP의 책임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사는 문제가 없지만 댓글만 문제 있는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사가 문제 있는 경우 기사가 삭제되면 댓글도 나중에 함께 삭제되기 때문에 현재 방식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분쟁조정 당사자가 언론사나 ISP가 아니라 댓글 작성자가 됐을 경우 실효성 문제를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김경환 변호사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셜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2012년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위헌결정을 받으면서 댓글을 작성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가 굳이 개인정보를 받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셜댓글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만약에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댓글이 작성된 경우라면 언론중재위원회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든 댓글 작성자가 누구인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수사권을 가진 기관에서 댓글 작성자가 누구인지 파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 댓글 피해자는 소송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제자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건수가 68건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댓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쟁조정을 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댓글 작성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댓글이 삭제되기만을 원할 뿐 댓글 작성자

에게 보상을 받는 식의 다른 구제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 건수가 68건인 데 비해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삭제신청건은 심의된 것만 연평균 3,800건 정도입니다. 이를 통해 봤을 때 삭제만으로도 만족하는 피해자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이외에는 소송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사가 복제되어 전파된 경우 이로 인한 피해구제를 언론중재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특히 ‘기자가 신문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사뿐만 아니라 그 기사를 자신의 블로그에 동일하게 게재한 경우까지 보도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기사 일부를 편집하거나 잘라내서 기사에 대한 내용, 혹은 기자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는 언론중재위원회보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 게시물 전체를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댓글 영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ISO라든지, 각 온라인신문사업자가 자율규제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한다든지, 현재 임시조치제도가 사업자에 다소 불편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희(사회자)

댓글 규제에 효용성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댓글을 올렸는지 알아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소셜계정은 서버가 외국에 있을 경우 계정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 모색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궁금한 점이나 의견 발표해 주십시오.

강홍렬(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사회분석실 연구책임자)

오늘 세미나 주제가 ‘디지털 시대, 언론중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인데 여기에 매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디어를 말할때 언론을 이야기합니다만, 언론매체라고 하면서 언론과 매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언론의 기능과 매체의 기능을 한번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은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각각의 기능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언론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매체의 변화로부터 유도된 것입니다. 언론적 기능과 매체적 기능을 나눠서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이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미디어를 통한 뉴스유통경로를 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은 미디어의 속성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으며, 언론이 인터넷 부분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언론 기능은 대부분 확인된 정보에 대한 평가, 또는 그것에 대한 결합에 있습니다. 일종의 해석이자, 정보의 재가공입니다. 사실확인도 검색이나 SNS를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언론 미디어가 아닙니다. 사실확인도 있어서 SNS 등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언론의 기능을 사실확인이라는 것과 연계시키는 게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은 과거와 달리 개방적으로 운영됩니다. 트위터를 통해 언론 에이전시와 독자가 상호소통 하는 개방성이 그러한 예입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언론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다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론 기능을 볼 때 공적 공간 내에서의 사회적 기능을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매체 기능을 살펴보면,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전파력이나 시간성·공간성에 의해서 언론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조작 부분에서 조작이 해석이라는 부분과 상당히 비슷하고, 창작이라는 것과도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와 관련된 기능을 봤으면 합니다. 인터넷 공간 내에서 매체 기능이 작동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적인 기사가 났을 때 보수집단은 열광하고, 이에 대해 정정보도를 한다면 그 내용은 진보적인 성격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정보가 서로 다른 채널로 다르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매체 자체는 균일하지도 균질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언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터넷이라는 공간 자체가 대단히 비소통적이라는 점입니다. 즉 본인이 원하는 정보만을 얻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도 혹은 시사, 정보 중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없습니다. 양날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집단에서는 반드시 정정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부분에서는 정정을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안 하는지에 대한 균형이 이뤄져야 할 텐데 문제는 미디어가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중재 대상 기준에 추상적인 개념을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가는 게 옳은지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하여 판단은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기능과 콘텐츠 기능을 나누어 보자고 해서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로 완전히 나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두 기능은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입니다. 매체적 영향을 받은 언론의 기능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또한 언론적 개념을 매체적 측면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협

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자로서 세미나 주제와 관련한 제 의견을 개진해보았습니다. 이를 하나의 제안으로 보시고 비판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희(사회자)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콘텐츠 쪽이고 미디어는 매체 쪽인데, 이 둘을 분리해서 보자는 신선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분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중재위원 / 제주대 통역대학원 교수)

개인적으로 ‘언론중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일까’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일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뭔가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지속적인 대원칙 같은 것을 고민해봐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들으면서 새로운 걸 모색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별로 새로운 건 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주제의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과연 저 ‘새로운’에 지속가능함이라는 개념이 포함되는지 생각해보았으면 하고, 지속가능한 대원칙 속에서 새로운 것을 조금씩 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문기(중재위원 /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발제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구분권 소장의 토론 내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언론의 표현자유 침해 소지를 언급하셨는데, 결국 저희가 발제내용에서 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크게 삭제청구권과 접근차단권 두 가지인 거 같습니다. 기사삭제청구권은 이를 기반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어떠한 처벌을 내리기보다는, 이 청구권을 통해 언론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언론사에 기사 삭제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차단청구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조정·중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을 구제할 수 있고, 그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검색차단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포털사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제하는 이유는 사실상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에 보면 임시조치에 대한 규정도 있고 연관검색어에 대한 차단규정도 있고 자동완성검색

에 대한 차단규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에 보면 정보통신망법에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명예훼손이라든가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명확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중재법 내에 검색차단청구권 관련 조항이 포함이 된다면 KISO의 정책규정의 근거가 마련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다 하고 있다, 검색차단을 통해서 사실상 잊혀질 권리에 대한 일정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적용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유봉석 센터장께서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사삭제기능에 의해서 원기사는 이미 삭제가 됐는데 다른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그 기사가 복제·전파되었을 때 연관 검색어 기능이나 자동완성 검색 기능을 차단시킴으로써 검색차단청구권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법에서 기사삭제청구권을 법안에 포함시키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검색차단청구권이 자연스럽게 도입됨으로써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세미나 발제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재위에서 이를 위해 기사삭제청구권이나 검색차단청구권을 법안에 어떻게 연계시킬지, 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여쭙보고자 합니다.

박성희(사회자)

이에 대해 구본권 소장님과 유봉석 센터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본권(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언론중재절차에서 기사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현실로 인정하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는 중재부에 따라서, 혹은 중재부에 오기도 전에 근거 없이 인위적으로 언론사와 청구인들 간에 일종의 거래를 기반으로 삭제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지금 언론의 권위와 신뢰도를 훼손하는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요청하면 삭제해주고 중재위에 온 것도 기사 삭제에 대한 기준이 공식화되지 않다보니 이를 중재부에서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달라진 매체 환경을 반영해서 기사삭제청구권의 입법화가 필요하며, 언론이 공적으로 수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변경이 가해질 경우 반드시 공적으로 기록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사가 삭제되더라도 다 삭제되어서는 안 되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내는 보고서에 기록이 된다는지 언론사별로 고충처리보고서에 기록이 된다는지 어떤든 간에 어떤 기사가 삭제됐으면 삭제 기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사삭제청

구권이 공식화될 필요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일종의 기준 마련과 투명성 및 언론의 공적 기능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색차단청구권은 기사삭제청구권이 입법화되면 좀 더 쉽게 도입이 될 거라 봅니다. 지금 언론중재법에도 인터넷 기사를 6개월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정보도라든지 반론보도를 청구하려면 일종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원보도가 없어지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언론도 6개월 동안 서버를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사삭제청구권이나 검색차단청구권이 도입되어도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그것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이는 피해구제에 있어서도 기본이 되는 사항이지만, 검색차단에 있어서 언론의 보도 행위와 검색 행위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나 도서관에 가면 과거의 신문이나 방송사의 파일도 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보도를 없애는 것은 안 되고, 그래도 어딘가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그것이 연간 검색어라든지 키워드를 통해 너무나 쉽게 검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을 막아주면 됩니다. 유럽사법재판소가 소위 ‘잊혀질 권리’ 판결에서 신문사의 데이터베이스는 유지하라고 하면서도 구글에서 마리오 곤잘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기사로의 링크는 끊으라고 한 것은 기사와 언론의 공익성 및 기록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차단하고자 하는 절충적이고 균형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봉석(네이버 미디어플랫폼센터장)

포털에 관련된 질문도 있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사삭제청구나 검색차단청구가 피해자 구제의 효용을 높이는 측면이라는 것에는 깊이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발제에서 임시조치가 언급되었는데, 임시조치가 되려면 검색차단이나 접근차단, 삭제 등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것들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는 법적 근거가 미약합니다. UCC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바로 블라인드 처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30일이라는 임시조치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30일이 지나도 이의를 제기하는 게시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용되는 경우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어서 관련법을 함부로 삭제하지 못하게끔 강화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사의 경우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서 임시조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시조치에 준하는 삭제, 검색차단, 접근차단은 현실적으로 조정이나 중재

의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포털은 언론사로부터 전재료를 받고 사오는 기사를 내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합니다.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와 무관하게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포털 내부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재위 결과를 보면 같은 기사라도 포털 내 DB에서는 삭제하고 언론사의 DB는 그대로 두라는 결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포털 DB에서만 삭제하면 그 기사를 찾아가는 경로가 없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검색차단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이 명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명문화된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어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법상으로 UCC와 기사를 정보통신망법과 언론중재법에서 각각 다르게 보고 있는데, 임시조치에 의해서 언론자유가 얼마나 침해되는지는 일반 UCC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는 다른 상황이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희(사회자)

기사삭제청구권, 검색차단청구권 등의 도입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우동(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포함해서 올해 초부터 이와 관련된 다양한 방안들을 법안화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는 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침해배제청구권에 지금까지 논의된 삭제청구나 검색차단 등을 담고 있고,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검색사업자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시하여 침해적 내용을 검색차단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박성희(사회자)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욱(국민일보 온라인뉴스부장 / 고충처리인)

고충처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사 삭제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는 오보도 있지만 ‘과거의 내 모습이 비춰지는 게 너무 괴롭다’는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문 창간 때부터 이어져온 ‘소년소녀가장 돕기’라는 시리즈물이 있었는데, 여기에 나왔던

당사자들이 20여 년이 지나 성인이 된 뒤에도 자기 이름이 검색되는 것을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청이 오면 회사 내 기사 삭제를 위한 시스템이나 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충처리인의 재량에 의해서 판단하고 삭제여부를 결정하는 실정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법적·제도적으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론자 중 한 분이 언론의 기록적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국가제도를 바꿔나가실 생각은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다음으로 유봉석 센터장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댓글은 기사에 부속돼 있고 기사가 삭제되면 댓글도 자연스럽게 삭제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모자 사건’에서 세 모자의 기자회견에 대한 간단한 2.5매 분량의 간단한 스트레이트 기사를 게재했는데 그 기사에 댓글이 20만 개가 달렸습니다. 신문사 서버가 아니라 네이버 서버에 저장된 기사에 댓글이 그렇게 달린 것입니다. 그때 신문사에서는 굉장히 큰 고민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다’는 기사였기 때문에 오보일 가능성도 높았으나, 댓글이 20만 개가 달려서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었습니다. 댓글을 단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게재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댓글이 기사에 부속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기사를 삭제한다면 댓글 20만 개가 갑자기 사라져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큼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성희(사회자)

지금 말씀하신 고민이 위원회의 고민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유봉석 센터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석(네이버 미디어플랫폼센터장)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구조상 댓글이 기사의 부속물로 보여지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사가 삭제되면 댓글이 남아있지 않고 삭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댓글을 게시자의 창작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아서 댓글을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으로 삼을 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댓글에 대해 현재의 관행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포털이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작권을 갖고 있는 언론사가 기사를 삭제하는 것은 기사에 오류나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거나 기사에 실수가 없더라도 명예훼손적 측면에서 보호받을 자의 권리가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기에 준해서 댓글을 블라인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댓글 게시자가 자신의 댓글을 모아 볼 수 있는 공간에는 그 댓글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적인 의미에서 댓글이 삭제되는 것이며 그 기사의 부속물로서 삭제되는 것이지 그 댓글의 생명력은 개인의 창작물로서는 계속 남아 있는 시스템입니다.

구본권(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고승욱 국민일보 온라인뉴스부장께서 기사 삭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하여 한겨레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여 년 전에 온라인뉴스부를 맡으면서 바로 그러한 고민에 부딪혀 신문사 내에서 일종의 자문위원회를 열었고 법률가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내린 결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보인 경우, 두 번째 최종심에서 무죄나 무혐의 판결 받은 경우, 세 번째 공익성에 비해서 기사 관련자의 프라이버시가 지나치게 노출된 경우 등에 한해 증빙을 가지고 요청하면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든 사례입니다.

박성희(사회자)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발제자나 토론자께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시고 각자 입장에서 답변을 하시거나 의견을 내시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성옥(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토론내용과 관련하여 발언하셨는데, 제가 강조했던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업자 중심의 규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에 분쟁조정부가 있지만 현재 조직이나 처리하는 업무가 소극적이고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기능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언론중재위원회는 전국에 중재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가 다른 것은 당사자 간의 조정과 중재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두 기관이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강홍렬 박사께서 공론장 개념을 통해 지금의 언론과 미디어 환경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언론이 균질적이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는 것, 언론의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공론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디어나 언론의 구분이나 언론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 공연성을 기준으로 보자고 하면서도 그 대상은 사실적 주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국한해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에서 사실적 주장에서 확대해서 적용하자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자칫 의견이나 논평도 언론중재법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받아들여진다면 표현의 자유나 공론장을 제한하는 경우가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성희(사회자)

오늘 발제를 해주신 양경승 교수께서 전체적인 코멘트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승(발제자)

김재원 중재위원께서 ‘영원한 패러다임은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사회는 변하고 그 중심축은 기술입니다. 강홍렬 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언론과 매체를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언론은 기사를 만드는 것이고 매체는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요즘에는 그것이 분리되어 있고, 언론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중심축도 이제 인터넷으로 이동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구제절차나 수단으로는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phem글이나 댓글 같은 경우에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 또한 삭제해 해서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법으로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언론중재법의 조문을 읽어보면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민법 역시 불법행위책임 조항이 들어있고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잊혀질 권리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관련 논의자들은 잊혀질 권리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언론계 종사자분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계십니다만, 진실이 아닌 정보와 그 정보가 유통되어 관련자가 피해를 입거나, 장래에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경우가 중심이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가 공연성이 없는 공간에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나온 의견 중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공적 기관이 기사 삭제와 관련된 그 동안의 전말을 일괄 기록하는 것도 언론법제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박성희(사회자)

지금까지 현장의 생생한 의견 많이 들었습니다. 언론중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지금 세미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께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박용상(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관심을 가지고 토론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시대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언론의 자유는 거의 무한정 확장되는 데 반해 그에 대한 피해구제제도라는 것은 전혀 개선이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간의 간극을 시정해보자는 의미에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에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인격권에 기한 기사삭제청구권인데, 이는 사이버 공간 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인격권에 기한 기사삭제청구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디지털 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권, 사생활 자유권, 초상권, 성명권 등의 인격권이 침해당했을 때, 그 주체가 살아있는 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람에 대해 언제든지 침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정정보도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법상의 명예회복청구권이라는 것은 보통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고의·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보에 대해서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결국 피해자의 오보에 의한 피해는 그대로 있는데 배상책임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권에 기하면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명문화하고자 하는 기사삭제청구권은 구본권 소장께서 예전에 만들었다고 하는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것이며, 이를 법제화하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허위로 입증된 사실이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추후에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공공성에 비해서 사생활의 보호가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사삭제청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개하

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있더라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이 안 되면 그것은 기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검색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정한 기사가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한 누구든지 언론사에 들어가서 열람이나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구제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사삭제청구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새로운 권리를 만들면 언론사에 부담이 되리라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사는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없도록 언론사가 일반 기사와 따로 구분해서 보관하면 될 것입니다. 따로 보관하면 역사적 기록을 얼마든지 보존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댓글이나 펴글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개별 이용자의 표현행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댓글이나 펴글은 주로 언론보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에 달린 댓글 혹은 언론보도를 퍼가서 블로그나 카페 사이트 등에 올린 펴글의 경우에 대해서만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고자 합니다. 댓글에 대해 유봉석 센터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창작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의제설정입니다. 언론보도에 달린 댓글은 언론이 설정한 의제에 대해 피드백을 다는 행위이므로 댓글 역시 여론형성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은 미디어로 인한 인격권 피해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댓글도 소위 언론의 여론형성기능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이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관여해서 보도와 함께 판단해야 피해구제가 올바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보도는 위원회에서 판단하고 댓글은 다른 기관에서 판단하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이 경우 행정력의 낭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대해 이미 판단을 내렸다면, 위원회가 댓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펴글의 경우는 이를 명확하게 구제해주는 어떠한 기관도 없습니다. 펴글은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한 보도 혹은 중재절차에서 삭제하거나 정정보정으로 한 보도를 퍼간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펴글은 수없이 복제·전파됩니다. 정정보도의 경우 일회적 보도에 그치고, 설령 기사가 삭제되더라도 보도를 퍼간 글이 수없이 많은 경우 피해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검색했을 때 원보도가 나오지 않더라도 퍼간 기사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구제할 필요가 있음에도 지금까지는 구제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양경승 판사님과 사회를 맡아주신 박성희 교수님, 그리고 지

정토론에 나서주신 구본권 소장님, 김경환 변호사님, 김동규 교수님, 유봉석 센터장님, 윤성옥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플로어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자 여러분께서 개진해주신 의견들은 언론피해구제제도의 개선 과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